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년 3월 11일

나. 제안자: 김현희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3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현희 의원)

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(안 제3조)

- 다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, 단장의 임무, 실무팀 편성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4조 ~ 제6조)
- 라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(안 제7조)
- 마. 재정지원(안 제8조)
- 바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 2
- 나. 협조부서: 협치분권과
- 다. 입법예고(2022. 3. 11. ~ 3. 16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가. 제정 취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,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내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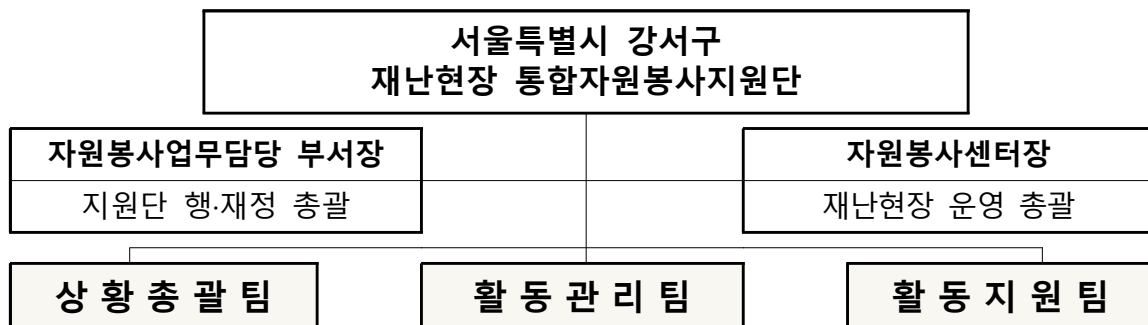
-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단의 구성¹⁾, 단장의 임무, 실무팀의 편성²⁾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- 안 제7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의 재난상황정보 공유 및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보고 등을 규정함
- 안 제8조에서는 원활한 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재정지원을 명시함
-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 신설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
-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

1) 지원단의 구성: 공동단장 2명(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,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)과 단원

2) 지원단의 운영 편제



-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등록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